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139
----------	----------

제출연월일 : 2023년 11월 일
제출자 : 강서구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시 저소득층 및 취약보육 계층
아동 밀집 지역 등을 우선 고려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놀이돌봄서비스
제공에 따라 이용료 징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보호자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서울형 키즈카페) 설치 시 취약계층

아동 밀집지역 우선 고려 규정 신설(안 제3조제2항)

나. 놀이돌봄서비스 이용료 징수 기준 추가(안 별표 1)

※ 놀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2,000원 추가

다. 놀이돌봄서비스 이용료 감면 기준 적용 추가(안 별표 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제11조
- 2)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2조, 제4조, 제7조의2
- 3)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4) 「지방자치법」 제153조, 156조

나. 예산조치: 붙임 비용추계서 참고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3. 10. 6.~2023. 10. 26.) 결과: 의견 없음
- 2)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 3) 규제 사전심사 결과: 해당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
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놀이기구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
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1.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2. 취약보육 대상 인원이 많은 지역

별표 1,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이용료 징수 기준(제5조제1항 관련)

시 설	이용대상	이 용 료	비 고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영유아	2,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명당 이용금액 • 1회 이용시간: 2시간 (2시간 미만은 2시간으로 간주) ※ 놀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2,000원 추가
	보호자	1,000원	

- ※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 ※ 놀이돌봄서비스란 아동의 놀이활동을 육안으로 관찰하고 위험요인 발견 시 사전 방지하는 수준의 돌봄을 말한다.(놀이돌봄서비스 신청 아동은 단독 입장 가능)

[별표 2]

이용료 감면 기준(제5조제2항 관련)

시설	감면 기준	대상	비고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전액 감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반한 성인 1명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6. 어르신(65세 이상) 7. 영유아 20명 이상 단체의 인솔 성인(영유아 10명당 1명) 8. 구청장이 놀이시설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놀이돌봄서비스 이용대상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함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설치 및 운영) (생략)</p> <p style="margin-top: 20px;"><u><신 설></u></p>	<p>제3조(설치 및 운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 style="margin-top: 10px;"><u>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놀이시설을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u></p> <p style="margin-left: 20px;"><u>1.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u></p> <p style="margin-left: 20px;"><u>2. 취약보육 대상 인원이 많은 지역</u></p>																					
<p>[별표 1]</p> <p style="margin-top: 20px; text-align: center;"><u>이용료 징수 기준</u>(제5조제1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시 설</th> <th style="text-align: center;">이용대상</th> <th style="text-align: center;">이용료</th> <th style="text-align: center;">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td> <td style="text-align: center;">영유아</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원</td> <td rowspan="2" style="vertical-align: top;"> ・1명당 이용금액 ・1회 이용시간: 2시간 (2시간미만은2시간으로간주)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보호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원</td> </tr> </tbody> </table> <p style="margin-top: 10px;">※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하여야 한다.</p>	시 설	이용대상	이용료	비 고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영유아	2,000원	・1명당 이용금액 ・1회 이용시간: 2시간 (2시간미만은2시간으로간주)	보호자	1,000원	<p>[별표 1]</p> <p style="margin-top: 20px; text-align: center;"><u>이용료 징수 기준</u>(제5조제1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시 설</th> <th style="text-align: center;">이용대상</th> <th style="text-align: center;">이용료</th> <th style="text-align: center;">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td> <td style="text-align: center;">영유아</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원</td> <td rowspan="2" style="vertical-align: top;"> ・1명당 이용금액 ・1회 이용시간: 2시간 (2시간미만은2시간으로간주)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보호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원</td> <td style="vertical-align: top;"> ※ 놀이돌봄서비스 이용시, 2,000원 추가 </td> </tr> </tbody> </table> <p style="margin-top: 10px;">※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하여야 한다.</p> <p style="margin-top: 10px;">※ 놀이돌봄서비스란 아동의 놀이활동을 육안으로 관찰하고 위험요인 발견 시 사전 방지하는 수준의 돌봄을 말한다.(놀이돌봄서비스 신청 아동은 단독 입장 가능)</p>	시 설	이용대상	이용료	비 고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영유아	2,000원	・1명당 이용금액 ・1회 이용시간: 2시간 (2시간미만은2시간으로간주)	보호자	1,000원	※ 놀이돌봄서비스 이용시, 2,000원 추가
시 설	이용대상	이용료	비 고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영유아	2,000원	・1명당 이용금액 ・1회 이용시간: 2시간 (2시간미만은2시간으로간주)																			
	보호자	1,000원																				
시 설	이용대상	이용료	비 고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영유아	2,000원	・1명당 이용금액 ・1회 이용시간: 2시간 (2시간미만은2시간으로간주)																			
	보호자	1,000원		※ 놀이돌봄서비스 이용시, 2,000원 추가																		

[별표 2]

이용료 감면 기준 (제5조 제2항 관련)

시설	감면 기준	대 상	비고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 시설	전액 감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반한 성인 1명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6. 어르신(65세 이상) 7. 영유아 20명 이상 단체의 인솔 성인 (영유아 10명당 1명) 8. 구청장이 놀이시설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별표 2]

이용료 감면 기준 (제5조 제2항 관련)

시설	감면 기준	대 상	비고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 시설	전액 감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반한 성인 1명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6. 어르신(65세 이상) 7. 영유아 20명 이상 단체의 인솔 성인 (영유아 10명당 1명) 8. 구청장이 놀이시설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놀이돌봄서비스 이용대상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함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의 발생 요인: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및 운영에 따른 놀이돌봄서비스 이용료 징수
2. 비용추계의 전제
 - 산정근거: 2022년 서울형 키즈카페 추진계획(서울시 가족담당관 24864, 2022. 5. 26.)
2023년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자치구 지원계획(서울시 아이돌봄담당관 2170, 2023. 2. 13.)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분		연도					합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세입	놀이돌봄이용료	369	5,199	7,644	7,644	7,644	28,500
□ 총 비용		369	5,199	7,644	7,644	7,644	28,500

4.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구분		산출내용	금액(천원)
총계		2023년 1개소, 2024년 이후 3개소 운영에 따른 산출 비용	28,500
놀이돌봄 이용료	2,000원 추가	<키즈카페 연간 놀이돌봄서비스 이용료> - 1호점: 2명(정원)×3회/1일×2,000원×260일×70%=2,184천원 - 2호점: 3명(정원)×3회/1일×2,000원×260일×70%=3,276천원 - 3호점: 2명(정원)×3회/1일×2,000원×260일×70%=2,184천원 ※ 회차별 이용정원 미달 및 이용료 면제자 고려하여 70% 계산	28,500

5. 재원조달 방안: 해당없음

6. 작성자: 생활복지국 가족정책과 과장 김정근

(담당: 행정8급 임수아 / ☎ 2600-6490)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평가번호	2023-32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담당관	직급	행정7급	성명	정용훈
입안주무부서	가족정책과	조치일			2023. 10. 12.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 조례 일부개정안		- 부패유발 요인 없음			- 원안동의

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서

□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기구(서울형 키즈카페) 놀이돌봄서비스 제공 및 이용료 징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간 설치 시 저소득층 및 취약보육 계층 아동 밀집지역 등 우선 고려 규정을 신설하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보호자의 양육을 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기구(서울형 키즈카페) 설치 시 취약계층 아동 밀집지역 우선 고려 규정 신설(안 제3조제2항)
- 놀이돌봄서비스 이용료 징수 기준 추가(안 별표 1)
 - ※ 놀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2,000원 추가
- 놀이돌봄서비스 이용료 감면 기준 적용 추가(안 별표 2)

□ 검토의견

- 동 조례개정안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보호자의 양육을 지원하고자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기구(서울형 키즈카페) 놀이돌봄서비스 제공 및 이용료 징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간 설치 시 저소득층 및 취약보육 계층 아동 밀집지역 등 우선 고려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서울강서030		
정책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서명	가족정책과	
	담당자명	임수아	전화번호 02-2600-6490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10월 10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가족정책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놀이돌봄서비스 제공 및 이용료 징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간 설치 시 저소득층 및 취약보육 계층 아동 밀집지역 등 우선 고려 규정을 신설하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보호자의 양육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복지국장 (담당자/연락번호 : 안소현/02-2600-6762) 가족정책과장 귀하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설치자”라 한다)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이권”이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자유롭게 휴식 및 여가를 즐기며, 어린이놀이시설 등의 놀이공간에서 충분히 놀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4. “취약계층 아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
 - 나. 아동의 부모 등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의 아동
 - 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아동
 - 마.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아동
 - 바.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아동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놀이권 보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이 놀이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어린이놀이시설 등의 놀이공간을 지역별로 충분히 조성하여야 하며, 취약계층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놀이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놀이 관련 정책 등을 추진할 경우 아동의 의견을 묻는 등 아동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의2(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하여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료는 원가계산, 물가상승률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대상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시장은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이용료)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른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이용료는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별표 1]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이용료

구분	대 상	이용요금	비 고
입장료	아동 (0세 ~ 만9세)	3,000원/인/회	2시간 기준

※ 돌봄서비스 이용 시 돌봄비 2,000원/인/회 추가

□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